

정책연구 2020-01

#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연구

-노조의 사회적 책임론과 회계투명성 제고를 중심으로-

이상희



정책연구 20-01

2020. 06

#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연구

-노조의 사회적 책임론과 회계투명성 제고를 중심으로-

이상희



##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식융합학부 교수

숭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 대학원에서 법학박사학위(전공: 노동법)를 취득하였다.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강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는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식융합학부 교수(노동법 등 법학 담당)로 재직 중이다.

그간 정부위원회 활동으로는 고용노동부 근로시간면제심의회 공익위원, 기획재정부 정부경영평가단 평가위원, OECD Korea-NCP(National Contact Point,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 등 이의제기 국내연락사무소) 위원(현), 중앙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현),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 학회활동으로서는 한국노동법학회 부회장,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부회장, 한국비교노동법학회 수석부회장, 한국사회법학회 수석부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논문 및 저서로는 “Conflicting Interpretation of the Court and Government, and Uncertainty of the Wage System in Korea Comparison with Japan”(ASIAN SURVEY, UNIV. CALIFORNIA PRESS, 2017,1. 교신저자),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칙 적용 범위 검토”(노동법논총,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18.4.), “독일·EU의 근로자이사제 전개로부터 본 도입시 시사점 검토”(강원법학, 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 2018.6), “사내하도급 불법 파견 판단의 법경제학적 이해-대법원 2015.2.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을 중심으로-”(경희법학, 경희대법학연구소, 2016.12), 통상임금 소송에 관한 법경제학적 이해(박영사, 2인 공저, 2014), 노동판례백선(법문사, 공저, 2014), 청년일자리 찾기 전략 연구(화산미디어, 2012년) 등이 있다.

##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연구

-노조의 사회적 책임론과 회계투명성 제고를 중심으로-

1판1쇄 인쇄 | 2020년 6월 26일

1판1쇄 발행 | 2020년 6월 30일

발행처 |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 | 권태신

편집인 | 권태신

등록번호 | 제318-1982-000003호

(073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 TOWER 46층

www.keri.org

© 한국경제연구원, 2020

ISBN 978-89-8031-805-6

5,000원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종합목록 구축시스템(<http://kolis-net.nl.go.kr>)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 CIP2020027031)

# CONTENTS

요 약	5
I. 연구 의의와 내용	7
II.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논의	9
1.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논의 배경	9
2.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논의 내용	9
3. 국내에서 USR 논의와 노조의 재정(회계) 투명성	12
III. 주요국의 노조 회계 관련규율	14
1. 미국	14
1) 규율 체계	14
2) 법령상 규율 내용	14
3) 특징	17
2. 영국	18
1) 규율 체계	18
2) 법령상 규율 내용	18
3) 특징	21
3. 프랑스	22
1) 규율 체계	22
2) 프랑스 노동자총연맹의 규율 내용	22
3) 특징	24
4. 독일	24
1) 규율 체계	24
2) 독일 노동조합 규약상 규율 내용	25
3) 특징	26
5. 일본	26
1) 규율 체계	26
2) 규율 내용	27
3) 특징	28
IV. 결론: 정책 제언	29
1. 우리나라에서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논의 필요성	29
2. 우리나라에서 노동조합의 재정(회계) 투명성 제고 필요성	30
3.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재정(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	31
1) 규율 내용	31
2) 규율 방식	32
참고문헌	33



□ 노동조합이 가지는 단체의 기능과 역할에 비추면 민법상 단체와는 달리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 등 사회적 책무가 필요할 수 있음

- 노동조합은 민법의 사단의 성질도 가지지만 노동조합은 국가정책 형성과정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등 단체일반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노동조합에게도 사회적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USR 논의 등에 비추면, 노동조합과 같은 조직도 일정정도 사회적 책임이 필요함
-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재정 내지 회계가 얼마나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의 문제가 노조의 민주적 운영이 담보되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중요 요소라고 할 수 있음
- 국내 노동조합에서도 노조 재정 내지 회계 비리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에 비추어 이 연구에서는 국내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과 관련한 노조의 사회적 책임 내용으로서 노조의 재정 회계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와 관련한 논의를 검토해보았음

□ 노동조합의 회계감시 제도는 거대 노동조합 조직 체제를 가진 국가라는 공통적인 환경에서도 이를 법령을 통해 직접 규율하는 영미국가 방식과 노조 자율에 맡기는 유럽국가 방식으로 대조됨

- 영미국가에서는 법령을 통해 직접 노조 재정운영과 관련한 책임있는 행위를 요구하고 이에 대한 제재를 담은 규율방식으로 취하고 있으며, 영국은 회계감사 시스템을 중요하게 보는 유형이고 미국은 조합간부의 투명한 노조재산 운영 및 간부의 재산 보고 책임 등을 중요하게 보는 유형임
- 독일 프랑스에서는 각각의 노조가 자신들의 조직 및 자치 규범인 노조 규약에 노조 재정운영과 관련한 책임있는 행위 규범을 정하는 규율방식을 취하고 있고, 규율 내용은 매우 엄격한 정도로 보이며, 독일의 경우 업무감사 관련 규정까지도 포괄하고 있음
- 영미국가와 유럽국가는 모두 거대 노동조합 조직을 보유한 사례에 해당하지만 일본의 규율 방식은 영미형, 노조 규모는 크지 않은 사례에 해당함

□ 국내 노동조합은 거대 노동조합으로 보기 어려워 노조 재정비리 문제가 심하지 않다고 할 수도 있으나 대기업 등 일정 부문에서는 재정비리가 실재 발생되고 있으므로 회계 감시 강화 검토가 필요

- 국내 노동조합 중 대기업과 일정규모 이상의 공기업 노동조합의 경우 건전한 조합비 징수가 가능하고 조합재정도 안정적이며, 종종 발생되고 있는 노조 재정비리 사건은 주로 이들 노동조합에서 발생되고 있음
- 따라서 국내에서는 노동조합 중 재정 회계 비리의 개선으로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이 필요한 일정규모 이상의 대기업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핀셋 규율 방식이 필요하다고 보임
- 구체적으로 대기업 및 일정규모 이상의 공기업 노동조합의 경우 전문적 회계감사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 회계감사 외에 업무감사 도입 방안,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의 재정 회계관련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I. 연구 의의와 내용

□ 우리나라에서도 최근까지 노동조합 재정 내지 회계 관련 비리사건이 종종 등장하고 있음

- 국내 대기업 내지 대규모 노조에서는 여전히 노조 재정 내지 노조 회계관련 비리가 발생되고 있음<sup>1)</sup>
- 우리나라는 비리 가능성이 있는 거대 노조형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종전부터 대규모 노조의 재정 내지 회계 비리와 관련한 논란이 있어 왔음<sup>2)</sup>

□ 노동조합은 민법상 사단과 같은 단체이지만 노동조합의 기능이나 역할, 그리고 국민적 인식 등을 고려하면 일반 시민단체와는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론이 거론될 수 있음

- 특히 노동조합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민주적 자주적 운영이 중요하고 이를 담보하는 기능 중 가장 기초를 이루는 것은 노동조합의 투명한 재정 내지 회계 운영이라 할 수 있음
- 국내 노동조합의 재정 회계 투명성 논란은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관련한 도전을 초래하고<sup>3)</sup> 이러한 사정들은 향후 국내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그 역할과 민주적 운영

1) 가령, 최근에만 하더라도 “택시 노조간부가 기사복지기금 횡령 의혹 ... 경찰수사(연합뉴스 2018.11.21.일자: <https://www.yna.co.kr/view/AKR20181121066100051?input=1179m>), “역대 조합비 횡령 금호타이어 전 노조 간부 집행유예”(연합뉴스 2018.12.17.일자: <https://www.yna.co.kr/view/AKR20181217058100054?input=1179m>), “대동금속 노조위원장 횡령 배임 엄벌하라” 노조시위(연합뉴스 2019.1.23.일자: <https://www.yna.co.kr/view/AKR20190123063800053?input=1179m>), “역대 조합비 횡령 의혹 현대제철 노조 집행부 수사”(연합뉴스 2019.2.11일자: <https://www.yna.co.kr/view/AKR20190208108700065>), “[판결](단독) 노조비 횡령으로 실형 ... 노조간부 해임은 정당(법률신문 2020.1.16.일자: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8685>) 등이 언론에 오른 노조 재정비리 사건들임

2) 이에 대해서는 김정환(김정환, 2005), 노동조합 재정비리의 원인과 향후 과제, 월간노동리뷰 2005.6월호, 한국노동연구원, 24쪽 이하., 2005년을 전후하여 노조의 재정 투명성 내지 도덕성 관련 문제 제기 가 적지 않게 제기 되었다(매일노동뉴스 2005.5.24.일자 “재정투명성, 노조도 예외 아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396>., 매일노동뉴스 2005.5.25.일자 “노조 도덕성 재정 투명성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http://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433>).

3) 최근 대법원 2017.2.15. 선고 2016다264037(삼리불속행기각) 판결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6.10.14. 선고 2015나2054842 판결에서는 노조법 제25조 회계감사 규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공개해야 할 노동조합의 운영상황 등의 범위에 대하여, 단순히 규정상의 결산결과와 노동조합의 운영상황만이 아니라 노조법 제14조



상황을 점검케 하는 등 이른바 노동조합도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한 논의가 점증하는 것으로 발전할 수도 있음

□ 그간 국내에서 노동조합의 재정투명성 제고 관련 해외연구 등이 있어 왔고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즉 USR에 대한 일시적인 논의가 전개되어 왔음

○ 그러나 ISO 26000 국제표준(2010년)과 같은 USR의 논의는 노동조합 활동의 위축을 수반할 가능성 때문에 노동조합의 구체적 책임 내용을 다루는 활발한 연구는 일어나지 않고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의 방향에 대한 연구만 소극적으로 등장해 왔다고 볼 수 있음<sup>4)</sup>

□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론이 필요한지 검토와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내용 중 재정(회계) 투명성 방안을 고찰함

○ 그간 주요국의 노동조합 재정 회계 투명성 관련 제도 연구가 있어 왔고,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즉 USR에 대한 일시적인 논의가 전개되어 왔음

○ 이들 연구를 기반으로 국내에서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론 필요성을 규명해보고,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내용 중 가장 기초질서에 해당하는 노조의 재정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함

---

및 노조법시행규칙 제8조의 내용에 대해서 비록 열람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비치 보존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모두 열람할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 이들 규정의 취지가 노조 재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있고 각종 장부를 비치하여 조합원들의 재정상황과 운영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함으로써 노조가 자율적으로 내부 문제를 시정할 수 있게 하여 단결자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한다(강선희, 노동조합 운영상황 등에 대한 조합원의 열람청구권의 범위와 등사(복사) 청구권 인정 여부, 2017년 노동판례리뷰, 한국노동연구원, 2018, 178~181쪽도 이를 지지한다). 국내에서도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의 첩경이 노조 재정의 투명성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4) 이에 대하여는 정승국 강충호 한동균(정승국 외(2010)), 노조의 사회적 책임(USR) 논의의 현황 및 발전전망, 2010, 한국노동연구원.; 이장원(이장원(2010)), 노조의 사회적 책임(SR) 확산 방안,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심포지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Beyond (SR)), 발표자료.; 권순원(권순원(2010)), 변화하는 기업경영과 USR: USR의 이론과 효과, 2010년 하계 노동경제학회 발표자료 등을 참고



## II.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논의

### 1.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논의 배경

-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USR)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비되어 일컫는 용어임. 2010년 11월 ISO 26000을 통해 사회적 책임(SR)을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노조, 시민단체 등 여러 이해당사자들에게도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는데, 이 중 노동조합의 실천과제가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USR)으로 일컬어지고 있음
  - 일반적으로 USR은 노동조합 활동시 기업, 정부, 소비자, 하청근로자, 비정규근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포함하고 투명한 운영과 법적 윤리적 행동 준수를 통한 역할을 수행하라는 책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
  - USR의 주요 내용은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26000에서 체계화되어 있고, 그 중 USR에 관련된 핵심주제에 관한 지침은 조직지배구조, 인권, 노동관행, 환경, 공정운영관행, 소비자쟁점, 지역사회 참여와 개발 등 7가지로 표현되고 있음<sup>5)</sup>
- USR은 노동계에서 적극적으로 반기는 아젠다는 아니지만,<sup>6)</sup> 과거의 노동조합은 이러한 역할을 다 못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USR)론이 거론되기 시작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

### 2.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논의 내용

-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론과 관련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달리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도 제기될 수 있음. 하지만 노동조합도 단체로서 단체가 추구해야할 사회적 가치가 있다고 하는 주장도 여전히 제기될 수 있음

5) 정승국 외(2010), 8~12쪽.; 이장원(2010), 2쪽.; 권순원(2010), 발표자료를 참고

6)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는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논의 내용에서 본다.

- 실제로도 ISO 26000 개발 과정에서 일부 노동단체는 매우 소극적이었는데, 가령, 국제자유노동조합(ICFTU)은 USR은 CSR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했고, 독일노동총(DGB)은 USR 마련과 관련한 ISO의 추가적 활동 필요성에 의문이라고 밝히기도 했음
- 이에 반하여 이탈리아 노동조합총연맹(좌파)(CGIL)과 프랑스 민주노동연맹(CFDT), 그리고 일본의 노동조합총연합단체(렌고), 우리나라의 한국노동총은 제법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sup>7)</sup>

□ 그러나 ISO 26000은 노동조합도 단체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보편적으로 짊어져야 하고 그 핵심 주제에 대한 실천과제를 제기하고 있음. 특히 노동조합 조직 자체의 운영과 조합활동과 관련한 실천과제를 구체화 하고 있음<sup>8)</sup>

- 핵심주제 중 다섯째는 공정운영인데, 구체적으로 윤리적 행동기준의 준수, 집행의 민주성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 세부과제: 노조는 리더십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더욱 폭넓게 장려해야 함. 노동조합의 활동에 있어 윤리적 행동기준의 준수, 부패방지의 책임감 있는 활동, 법규의 존중, 투명한 조직 운영. 윤리적 행동강령 및 기준 마련/부패방지를 위한 관리관행의 수립 및 운영규칙 마련/노동조합의 운영과 관련된 법규와 관행의 준수/투명한 조직운영을 위한 관리지침 및 절차 수립(예산 및 재정운영의 투명성)
- 또 핵심주제 중 마지막 일곱 번째는 지배구조인데, 구체적으로 노동조합도 조직으로서 투명성과 법적 준수 및 의사결정과제에서의 투명성 등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음
  - 세부과제: 효과적인 지배구조는 설명책임, 투명성, 윤리적 행동, 이해관계자의 이해관계 고려와 의사결정 및 이행에 있어 법적 준수의 원칙과 실행에 근거함. 노동조합 의사결정시 합법성, 절차 공정성 및 투명성 요구

□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론에 관한 국내의 논의도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그 쟁점에서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음

-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의 쟁점을 비정규직 보호(김동원), 사회공헌활동/장애인고용/비정규노동자보호(노광표), 비정규직 보호/하청기업 지원/사회공헌 활동(김주일), 경영참여/협력사 공존/사회적 차별해소/글로벌 공동체 공헌/환경보호(배상호) 등 주로 노동조합 이기주의 극복으로 하는 입장이 있음<sup>9)</sup>

7) 이상은 정승국 외(2010), 17~19쪽을 참고

8) 이하는 정승국 외(2010), 15~16쪽을 인용

- 이에 대해 노동조합의 정보공개 등(이장원), 노조의 조직운영/이해관계자의 요구 반영/규범의 존중 준수(권순원) 등 노동조합의 조직운영과 노사관계 측면을 중요시 하는 입장도 있음<sup>10)</sup>

□ 위와 같이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논의는 주로 노동조합의 이기주의 내지 이익추구 행위와 관련한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공존 연대 등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국내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논의는 국제비교에서 제기되는 민주적 운영과제와는 조금은 다르게 차별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러한 원인은 국내 노동조합 운동의 특징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특히 국내 노동시장 이중구조 실태로부터 일부 대기업 공기업 노동조합의 이기주의적 조합운동과 관련한 것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가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더불어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한국의 독특한 현상이며 이는 대체로 거대 기업의 정규직으로만 구성된 우리나라 기업별노조의 특수한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음<sup>11)</sup>

9) 정승국 외(2010), 33쪽에서 소개된 내용을 재인용

10) 정승국 외(2010), 33쪽에서 소개된 내용을 재인용. 이밖에 그 이후 논의로서 정경호(정경호(2013),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노동연구 26호, 2013.10,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259쪽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노조의 사회적 책임의 실천을 위한 과제로서 법적 제도적 과제의 첫 번째 과제를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법의 준수를 들고 있음

11) 정승국 외(2010), 30쪽에서 고려대 김동원 교수의 견해를 소개한 내용을 재인용

### 3. 국내에서 USR 논의와 노조의 재정(회계) 투명성

□ 확실히 노동조합은 민법상 사단과 같은 단체에 불과하지만 노동조합이 미치는 사회 경제적 영향이 적지 않음

-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은 노사정위원회가 출범한 이래 비록 참여에 곡절은 있지만 국내 노동사회 관련 제도나 그 운영에 관련한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노동조합도 사회적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sup>12)</sup>
- 국내적으로 논의가 제기된 대기업 유노조 중심의 노동시장과 중소기업 무노조 중심의 노동시장으로 대변되는 국내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가 십수년간을 경유해 오면서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sup>13)</sup> 그 책임을 모두 국가나 기업에게만 돌릴 수 없고 노동조합도 아무런 책임이 없는지 반문도 필요

□ 국내 노동조합의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면 노조의 운영에서 노조의 도덕성 민주성의 요청은 강할 수밖에 없고, 특히 USR의 핵심과제 중 노조의 조직운영 측면인 노조 재정(회계)의 투명성은 무시할 수 없는 과제로 볼 수 있음

- 앞서 본 ISO 26000 핵심주제 중에도 이와 관련하는 윤리적 행동기준의 준수, 집행의 민주성 등을 포괄하고 있고, 국내의 USR 과제에서도 노동조합의 정보공개, 노조의 조직운영과 규범의 존중 준수 등 노동조합의 조직운영 측면을 중요시 하는 입장도 있음
- 앞서 본 바와 같이 특히 국내 노동시장 양극화 부문에서 수혜자에 해당하는 대기업 내지 대규모 노조에서는 여전히 노조 재정 내지 노조 회계관련 비리가 종종 발생하고 있고,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관련한 노조 구성원간의 법률적 쟁송 등 도전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사정들은 향후 국내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그 역할과 민주적 운영 상황을 점

12) 하경효,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재정운영의 투명성, 산업관계연구 제16권2호, 2006.12, 한국노사관계학회, 33~34쪽에서 우리나라 노동조합이 협약자율 외에도 공적영역에서의 의사형성과정에서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제도 및 사례를 예시하고 있다.

13) 가령, 장근호,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특징과 과제, BOK경제연구, 2018.11.에서는 최근까지도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글로벌 경쟁 심화, 대중소기업 원하청 관계, 대중소기업 생산성 격차 등을 양극화 원인으로 꼽고 있지만 이 중 기업규모별 노동조합의 교섭력 격차 및 기업단위 노사협상 등도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 정치권에서도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방안의 하나로 대기업 공공부문 노조 임금인상 3~5년 자제해 협력사와 나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조선일보 2019.3.11.일자 신문: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11/2019031100736.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11/2019031100736.html?))

검케 하는 등 노조 재정 투명성과 관련한 이른바 노동조합도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한 논의가 점증하는 것으로 발전할 수도 있음

□ 국내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한 환경은 대기업 공기업 부문의 노동조합 활동권을 증대시킬 경향을 가지므로 이들 노동조합도 자기 책임에 걸맞게 이른바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그 중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이 가장 기초적인 과제로 보아야 하고, 민주적 운영을 담보하는 요인 중 가장 기초 요소를 노조 재정 내지 회계 투명성 요소라고 볼 수 있음

○ 다만 국내 노동조합의 재정 회계 비리는 거대 노동조합을 가진 영미국가나 유럽국가와는 비교되기 어렵다는 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국내 대기업 공기업 부문 노조의 재정 회계 비리 등이 종종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내 노동조합의 특성에 맞는 노조의 사회적 책임 논의로 발전시켜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III. 주요국의 노조 회계 관련규율

#### 1. 미국

##### 1) 규율 체계

□ 미국의 노동조합 내부 운영에 관한 규율을 담은 법은 노사정보보고 및 공개법 (Labor-Management Reporting and Disclosure Act: LMRDA, 이하 노사정보 공개법)임

○ 이 법은 조합비나 노동조합 내부 징계 등 조합원들의 권리 보장 내용과 노동조합 운영과 관련한 조합민주주의와 재정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동조합 임원들에게 일정한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임

□ 이 법 중 노동조합의 재정투명성 관련규율 내용에 한정하여 소개함

##### 2) 법령상 규율 내용

□ 위 법은 노동조합의 보고 의무 내용을 많이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노동조합 일반에 관한 회계감사가 있고, 보다 상세한 회계내용을 보고하는 연차회계보고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sup>14)</sup>

○ 연차회계보고서의 상세내용은 자산과 부채, 수령금과 그 출처, 총액 1만불 이상을 수령한 조합임원과 노조 피용자에게 지급된 봉급 및 기타 지불금, 임원이나 조합피용자 또는 조합원에 대한 총액 250불 이상의 직간접적인 대부금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함(29 U.S.C. 431 제201조(a), (b))

- 노동조합은 이 보고서를 모든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보고서 확인에 필요한 회계장부, 기록, 계좌를 모든 조합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

14) 이하는 고용노동부(박지순, 조준모, 이상희, 진숙경, 노호창, 최석환: 박지순 외, 2011), 노동조합 재정투명성 확보방안, 110쪽 이하에서 요약 인용

해야 하며, 불이행시 해당조합원이 열람을 강제하는 소송을 관할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29 U.S.C. 431 제201조(c))

- 노동조합의 임원과 그 피용자는 해당 노조가 대표하는 근로자들의 사용자 및 해당노조가 거래하는 업체와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 채권, 증권이나 기타 또는 그 사용자 및 업체로부터 받은 수입이나 금전적 가치를 갖는 일체의 이득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함(29 U.S.C. 432 제202조 (a))
- 노동부장관에게 제출된 위 보고서와 문서의 내용은 공개되고 누구라도 열람 또는 사본을 얻을 수 있으며(29 U.S.C. 435 제205조), 보고서 제출 의무자는 보고서의 진위 검증에 필요한 기록과 자료를 보고서 제출 후 5년 이상 보관해야 함(29 U.S.C. 436 제206조)

□ 하부조직의 재산을 신탁 관리하는 노조는 노동부장관에게 신탁관리 개시와 종료 시 및 관리기간 중에 반년마다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이 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자, 허위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숨긴 자, 보고서의 근거인 문서, 장부, 기록 등을 은닉하거나 파괴한 자는 1만불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내지 양자가 병과됨(29 U.S.C. 461 제301조)<sup>15)</sup>

- 신탁관리는 노조의 규약 및 규칙에 의해 재정비리 시정, 단체협약 기타 교섭대표의무 이행, 민주적 절차 회복, 기타 노조의 정당한 목적 수행 등 동법이 정하는 목적을 위해 이루어져야 함(29 U.S.C. 462 제302조)
- 노동조합은 신탁관리기간 동안 신탁 관리하는 노조의 총회 내지 임원선거에서 신탁관리 대상이 되는 하부조직 대의원의 표결을 포함시키는 행위(단, 하부조직 전체 조합원이 참여한 선거에서 비밀투표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의 경우는 제외), 신탁관리대상이 되는 하부조직의 수령금이나 기금을 신탁 관리하는 노조로 이전하는 행위(단, 하부조직이 통상 부담하는 조세는 제외)와 같은 불법행위를 해서는 안됨(29 U.S.C. 463 제303조)
- 노동부장관은 조합원이나 하부조직의 진정에 따라 위 규정 위반의 진정을 조사하여 위법이 있고 여전히 시정되지 않았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관할 연방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고, 위 규정 위반에 의해 영향을 받는 조합원이나 하부조직도 관할 연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29 U.S.C. 464 제304조)

□ 노동조합의 재산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조합임원 및 기타의 자는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조합기금과 재산을 보유하고 규약이나 규약에 의한 집행부 의결

15) 이하는 고용노동부(박지순 외, 2011), 111쪽 이하에서 요약 인용



에 따라 노동조합 재산을 관리, 투자, 증대시켜야 하고, 이러한 의무관련 문제에서 이해가 충돌하는 단체와 거래하거나 노동조합의 이익에 반하는 금전적 인적 이해관계를 형성 유지해서는 안되며,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행한 거래와 관련하여 얻는 이익이 있다면 노동조합에 보고해야 하고, 이들 의무위반에 따른 책임을 면제하는 규약의 내용이나 조합집행부의 의결은 무효로 함(29 U.S.C. 501 제501조(a))<sup>16)</sup>

- 위 의무 위반 주장이 제기되고 조합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합리적 기간 내에 소의 제기, 손해의 전보,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조합원의 의무를 위반한 임원 등을 상대로 관할법원에 손해전보, 조합재산 확보 기타 조합이익을 위한 적절한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손해배상금액 중에서 합리적이라 생각되는 일부의 액을 소송과 관련하여 조합원이 불가피하게 지출한 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보상하는데 충당하도록 할 수 있음(29 U.S.C. 501 제501(b))
- 노동조합의 기금이나 재산을 횡령하거나 본인 또는 제3자를 위해 불법적이고 의도적으로 유용한 조합임원이나 조합의 피용자는 1만불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20 U.S.C. 501 제501조(c))
- 노동조합의 기금이나 재산을 다루는 임원 기타의 자는 그들 행위로 인한 손실을 담보하기 위해 법 소정의 담보금을 부담해야 하고(29 U.S.C. 502 제502조), 노동조합은 임원이나 피용자에게 총 2천달러를 넘는 부채를 초래하는 대부를 직간접적으로 행할 수 없음(29 U.S.C. 503 제503조(a))
  -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이 법을 위반한 조합 임원과 피용자의 벌금을 직간접적으로 납부해서도 안되고(29 U.S.C. 503 제503조(b)), 위 규정(제503조)을 위반한 자는 5천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29 U.S.C. 503 제503조(c))
- 위 규정의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그 판결이나 징역 종료 후 13년간 노동조합의 임원 기타 동법 소정의 직을 가질 수 없음(29 U.S.C. 504 제504조)

□ 노동부장관은 위 규정 위반과 관련한 조사의 권한을 가지고 조사를 위해 방문, 기록조사 및 질문할 권한을 가짐(29 U.S.C. 521 제601조(a))<sup>17)</sup>

- 이 법의 권리행사를 이유로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징계하는 것은 불법이고, 이에 위반하는 징계를 받는 자는 가처분을 포함 적절한 구제를 받기 위해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29 U.S.C. 529 제609조)
- 이 법의 권리행사에 개입하거나 이를 막기 위해 조합원에게 이 법 소정의 폭력 등을

16) 이하는 고용노동부(박지순 외, 2011), 113쪽 이하에서 요약 인용

17) 이하는 고용노동부(박지순 외, 2011), 114쪽 이하에서 요약 인용

사용하거나 그 사용을 위협하는 자는 1만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29 U.S.C. 530 제610조)

### 3) 특징

- 미국의 이 법이 제정되는 시기의 노사관계 환경은 와그너법을 정점으로 거대 노동 조합 활동이 왕성해짐과 동시에 부작용도 발생하여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규제를 도입하는 시기임. 특히 노동조합의 재정 회계 비리를 바로 잡기 위해 규제 수단을 모색하는 시기라는 특징이 있음
  - 다만 이 법은 현대사회에서도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에 필요한 원칙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음
  
- 미국 노동법이 노동조합 스스로의 재정 회계 비리 자체를 규율하는 내용에 큰 정성을 들이는 만큼 조합간부 등에 대한 재정 회계 비리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였지만 회계감사원의 자격과 요건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규율 규정은 없음
  - 조합간부 중 회계와 관련한 비리에 연루된 자가 있으면 비리연루자를 교체하는 내용의 상부조직의 신탁관리가 존재하는 특징이 있음(Landrum-Griffin법 제4편)
  - 연방노동부장관에 대해 연간회계보고서 제출과 조합원의 조합재정 관련 정보접근권 등 조합원의 권리 보장 내용은 노동조합에게 불필요한 정보 유출 등의 위험이 있을 정도로<sup>18)</sup> 잘 구비되어 있는 편임
  - 다만 회계감사원도 임원에 준하여 조합원들에 의해 직접 선출된다는 절차적 규정은 존재함
  
- 미국의 노동조합은 정치적 선거에 대해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개별 조합원들의 정치적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를 근거로 금지해 왔음(Taft-Hartley법 제304조)

---

18) 고용노동부(박지순 외, 2011), 187쪽

## 2. 영국

### 1) 규율 체계

- 영국은 전통적인 집단적 노사자치주의에 기반하여 노동조합의 재산관리를 노동조합이 신탁하여 수탁자의 책임으로 관리하되 그 수익자는 노동조합으로 하고 조합원은 직접적인 신탁 이익자가 아니어서 노동조합 재산 감시에 적극적인 접근을 하지 못하였음
- 그러나 1980년대를 전후하여 전국적인 불법파업 등 영국 노동조합의 거대한 힘의 행사 등으로 국가의 개입을 통해서라도 노동조합 내부 운영의 자율 보장을 노동조합의 민주주의 원칙 보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보접근과 회계관련 조사가 가능하도록 해 왔음

### 2) 법령상 규율 내용

#### □ 노동조합의 재산관리<sup>19)</sup>

- 영국법은 노동조합에게 법인의 지위를 부여하고, 노동조합의 모든 재산은 노동조합을 위해 신탁받은 수탁자의 관리책임하에 두어야 한다는 규정을 둠(1971년법(IRA 1971), 1992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통합법(TULRCA 1992), s 12(1) 참고)
- 조합원 전체의 이익을 위해 노동조합 재산이 신탁자에게 신탁되어 있으므로 수익자인 노동조합이 아닌 개별 조합원은 독자적인 수익자가 아니므로 조합재산에 대한 직접적인 신탁이익을 가지지 못한다고 해석됨
- 이 규정에 의하면 노동조합 외에 특별히 조합원이 노동조합 재산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개별조합원이 노동조합의 회계관리 등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도 인정되지 않고,<sup>20)</sup> 조합원의 노동조합 회계상황 조사는 조합규약에서 조합원의 회계조사 관련 규정이 있어야 가능함
- 따라서 수익자인 노동조합이 노조재정담당자 등과 같은 수탁자에게 조합재산과 관련한 조사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아무런 회계조사 권한은 없음

19) 이하는 고용노동부(박지순 외, 2011), 117쪽 이하에서 요약 인용

20) *Hoghes v TGWU*(Transport and General Workers Union) 사건 [1985] IRLR 382(고용노동부(2011), 117~118쪽에서 재인용)

○ 그러나 그 후 조합원에 의한 노동조합 재산 내지 회계 관련개입이나 사용용도 등에 대해 제재 내지 간섭을 가능토록 하는 규율이 등장하여 왔음

- 노동조합의 집행부가 불법파업 내지 불법피케팅에 참여한 조합원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조합기금으로 쟁의지원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집행한 사안에 대해 이를 반대하는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자금 지원의 무효와 중지를 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자, 법원(High Court)은 동 노동조합 규약의 목적에 비추어 파업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지원규정은 적법파업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불법파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권한남용행위(Ultra Vires)에 해당한다고 했음.<sup>21)</sup> 법원은 조합원은 누구나 조합의 포괄적인 목적에 포함되지 않은 용도로 노동조합의 자금을 사용하지 말 것을 노동조합에 대해 소송상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했음

\* 이 사건은 영국에서 유명한 1984~1985년 전국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광부파업 사건을 대상으로 한 것임. 또한 이 당시 영국의 선원노조가 광부노조 파업을 지지하면서 연대지원 차원에서 노조의 일반기금에서 광부노조에 지급하기로 승인을 결정하고 이를 지급하기 위해 선원조합원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결정에 대해 조합원이 이 결정은 선원노조의 규약에 반한다고 하면서 일반기금에서 광부노조에 기부가 적법하지 않고 급여공제를 금지하는 금지명령을 법원에 청구하였는데, 법원은 이 사안은 특별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집행위원회의 규약변경이나 이에 준하는 행위는 권한남용행위(Ultra Vires)로서 무효라고 했음.<sup>22)</sup>

- 수탁자가 규약을 위반하거나 법원의 관련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혹은 그의 일반적인 신탁의무를 위반하는 유형으로 위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원은 High Court에 대하여 금지명령을 포함한 당해 사안에 적합한 명령을 내려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음(1998 Employment Act 제9조, 현행은 TULRCA 1992 s. 16(1))

- 조합원 개인의 범법행위(불법피케팅에 대한 벌금, 법정모독죄 등)로 인해 이미 부과된 벌금이나 장래에 부과될 수 있는 벌금을 노조기금으로 대납해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TULRCA 1992 s. 15(1), 1998년 Employment Act 제8조로 신설). 이 규정 전에는 파업기간 중 불법 피케팅에 대한 벌금형을 조합기금에서 대납하기로 결정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음<sup>23)</sup>

□ 노동조합은 재정정보 관련 내용을 제출하고 설명할 의무, 조합원의 조합회계정보 접근권, 회계감사 등과 관련한 규정도 있음<sup>24)</sup>

○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명부를 관리하는 인증관(Certificate Officer, 통상산업주장관

21) Taylor v NUM(National Union of Mineworkers)(Derbyshire Area)(No.3) [1985] IRLR 99(고용노동부(박진순 외, 2011), 120쪽에서 재인용)

22) Hopkins v NUS(전국선원노조) [1985] IRLR 157(고용노동부(박지순 외, 2011), 120쪽에서 재인용)

23) Drake v Morgan 사건 [1978] ICR 56(고용노동부(2011), 123쪽에서 재인용)

24) 이하는 고용노동부(박지순 외, 2011), 124쪽 이하에서 요약 인용

임명)에게 연차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조합원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음

- 연차보고서는 노동조합의 대차대조표와 수익계정(독립적이고 전문적 자격있는 회계감사에 의해 인정된 것), 현금흐름표, 감사보고(TULRCA 1992, s. 32), 노조간부에게 제공된 급여와 이익의 세부내역(TULRCA 1993 수정 s. 32(3)(a))을 포함해야 하고, 공인회계사에 의해 작성된 감사보고서도 포함해야 함. 이밖에 인증관은 노동조합의 재정문제를 조사하기 위하여 조사관을 임명하여 조사하게 할 수도 있음
- 노동조합의 회계관련 위법행위가 일어났는지 조합원이 평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회계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연차보고서와 관련한 조합회계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수정 TULRCA 1992 s. 32(a)(1~6))
- 조합원이 회계자료에 대한 접근조사를 신청하면 노동조합은 이에 응해야하고 노동조합은 관련자료를 6년간 보존할 의무가 부과되며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회계자료 접근 거부나 회계자료 접근조사 신청에 대해 법원이 허용하는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으며(수정 TULRC 1992, s. 30(2), 29(1), 31), 노동조합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모독죄에 해당
- 1992년법(TULRCA) 노동조합의 회계감사 의무를 규정하고(TULRCA 1992, s. 32, 36, 37), 회계감사는 회사법상의 규정을 충족하는 자격을 요구하되 다만 조합원수 500인을 초과하지 않거나 수입과 지출 총액이 5천파운드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법상 회계감사 자격은 아니지만 인증관이 법률상 자격을 갖춘 회계감사를 임명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음(TULRCA 1992, s. 34)
- 노동조합의 회계정보관련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벌칙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한 유죄선고를 받은 자를 노조간부직에서 배제하거나 노동조합 간부로서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규정(TULRCA 1992. s. 45)

#### □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위해 조합기금의 사용시 이를 위한 노동조합의 승인결의 절차가 필요함<sup>25)</sup>

- 노동조합 규약에 정치적 목적을 위한 조합기금 지출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고, 반대 조합원을 위한 규정도 필요함
- 규정이 필요한 정치적 목적이란 정당에 대한 금전 사용, 정당에 대한 서비스나 재화의 사용, 후보자 선출 등 정치적 선거와 관련한 노동조합의 선거 시행, 정치적 직위자의 유지 활동, 정당에 대한 회의 개최나 사업거래가 주목적인 회의 개최, 정당과 후보자 등의 투표와 관련된 금전 사용 등(TULRCA 1992, s 71-84)
- 정치적 결의는 인증관에 의해 승인된 투표 규칙에 따라 행하여야 하고 이에 반하는 경우

25) 이하는 고용노동부(박지순 외, 2011), 131쪽에서 인용

조합원은 인증관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TULRCA 1992, s 79-80)

- 특히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 소유의 별도의 기금에서 정치자금 지출해야 하고 정치자금 납부 반대 조합원에 대해 납부 의무 면제와 이를 이유로 한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규약의 기재사항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TULRCA 1992, s 82(1))
- 노동조합이 위 규약을 위반했다고 보는 경우에는 인증관에게 시정신청을 할 수 있음 ((TULRCA 1992, s 82 (2)~(3))

□ 노동조합에 대한 조합원의 권리의무와 관련한 시정신청 등과 같은 분쟁을 신청 받은 인증관은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에 감독 등의 역할이 확대되어 왔음<sup>26)</sup>

- 1993년 노동조합개혁과 고용권리법에서는 노동조합이 회계를 규율하고 있는 법규정을 따르고 있는지, 노동조합의 정치기금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노동조합의 정치자금규정의 위반에 관한 청구주장의 청문, 재정상의 배임행위 주장과 관련한 청구주장의 청문과 조사 등으로 확대됨
- 1999년 고용관계법 이후에서는 조합원의 조합회계 조사권 접근권이 침해된 경우 청구주장을 인증관에게 부여하고 조합원의 주장이 타당할 경우 조합원이 회계를 조사하고 회계사를 대동할 수 있도록 하여 회계장부의 제공을 명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음(수정 TULRCA 1992 s.31(2)(B))
- 노동조합이 정치적 목적을 위한 조합의 일반기금을 사용하는 경우를 규율하는 법규정을 위반했다는 조합원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이행명령권을 포함한 관할권을 부여받고, 구제명령권도 법원의 확인결정이나 명령과 동일한 집행력을 가진(수정 TULRCA 1992 s. 72 A(7) 및 s.72A(9))

### 3) 특징

□ 영국 노동조합의 재정 회계 관련 규율이 변화해온 환경은 1980년대를 전후한 영국의 거대 노동조합 활동이 불법파업 등 영국의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전통적인 노동조합 자율 대신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행정관청에 연례적인 연차보고 의무와 특히 조합원에 의한 노동조합의 회계정보 등에 대해 자세하고 구체적인 접근조사권을 보장하고 법원의 명령이나 인증관을 통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까지 구비하고 있음

26) 이하는 고용노동부(박지순 외, 2011), 132쪽 이하에서 인용

- 영국에서는 조합간부의 회계와 관련한 여러 의무 위반 등 회계관련 비리에 연루되어 유죄가 선고된 노조간부의 경우 일정기간 노조간부직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두고 있고(수정 TULRCA 1992, 45조의(b)), 이들을 해임조치 하지 않고 간부직을 수행중인 경우 인증관이나 법원이 해임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영국에서는 노동조합의 정치적 목적의 기금은 조합의 일반기금이 아닌 별도로 설치된 정치기금에서 사용되어야 하고(수정 TULRCA 1992, 제83조3항), 정치자금의 각출을 거부하는 조합원에 대해 노동조합의 차별행위를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음(수정 TULRCA 1992, 제82조1항)
- 영국 노동조합의 재정관련 규율 변화 역시 현대산업사회의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에 필요한 원칙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교훈도 주지만 특히 회계감사의 독립성 내지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도가 주는 시사점이 중요하게 평가될 수 있음

### 3. 프랑스

#### 1) 규율 체계

- 프랑스는 노동조합의 재정이나 회계와 관련한 특별한 노동법적 규율이 존재하지 않음
- 프랑스 노동조합 단체 스스로 조합재정이나 노동조합 회계와 관련한 민주적 운용에 필요한 룰을 자치적으로 마련하고 있음

#### 2) 프랑스 노동자총연맹의 규율 내용

- 프랑스 노동법에서는 조합비 공제 조항(check-off clause)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서(노동법전 제412-2조 2항), 조합비를 노동조합의 징수요원이 직접 징수함<sup>27)</sup>
  - 프랑스 노동자총연맹(C.G.T.-F.O.(Confederación General del Trabajo-Fuerza Obrera)은 규약에서 산하 노조의 조합비 납부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징수를 통해 단위노조-연맹-지역본부-총연맹 몫으로 배분(연맹규약 제19조)

27) 이하는 고용노동부(박지순 외, 2011), 151쪽 이하에서 요약 인용

- 프랑스 노동자총연맹의 징수일자, 성명, 수령한 액수, 급여수준과 조합원카드 등 교부 자료간 일치 여부를 조사하고 기재하는 맹비 징수 절차<sup>28)</sup>만으로도 조합비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구조로 평가됨

□ 프랑스 노동조합의 재정은 조합비로 주로 구성되는 것 이외에도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금, 기업에서 노사협정에 따른 지원, 법령에 기초한 비용상환제도 등으로 구성됨<sup>29)</sup>

- 정부 지자체의 보조금은 교부의 기준과 요건의 충족은 물론 교부 후 보조금 사용 내역이 상세하게 보고되어야 함. 다만 보고가 노조의 자주적 조직관리에 간섭하는 것으로 되어서는 아니 되고<sup>30)</sup> 임대료지급영수증, 전화 전기 사용료 등과 같이 보조금의 용도에 맞게 사용된 근거만 보고의무를 짐
- 조합비 지출 내역은 관리비용과 활동비용으로 구분되나 노조 투쟁비는 조합비와 달리 조합원의 특별모금이나 일반 공중에 대한 모금, 국제적인 지원 요청 모금 등으로 별도로 모름<sup>31)</sup>

□ 프랑스에서는 노동조합 재정의 관리 감독에 관한 법적 규율은 존재하지 않지만 노동조합의 규약과 조직 내의 시스템을 통해 매우 엄격한 관리 형태를 취한다고 알려짐<sup>32)</sup>

- 회계관리의 기본 원칙으로, 영수증 출처, 근거서류 작성, 정비가재 등의 형태로 관리되어야 하고, 재정국장이 집행한 모든 지출은 사무국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집행부의 규율을 따라야 하며, 회계자료는 본부의 안전한 곳에 보관되어야 함
- 재정국장은 노조의 지도기관에 의무적으로 최소한 매달 정기적인 재정보고를 해야 하고, 조합원의 정보청취권 및 투명성에 관한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해 조합 총회에서 재정보고<sup>33)</sup>를 함
- 노동조합은 노조 조직내에서 다른 직책을 맡지 않은 동료들로 하되 회계관리수칙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진 후보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여 감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함

28) C.G.T.-F.O., Le guide des Tresoriers, 2003, p.24(고용노동부(박지순 외, 2011), 152쪽에서 재인용)

29) 이하는 고용노동부(박지순 외, 2011), 154쪽 이하에서 요약 인용

30) C.G.T.-F.O., Le guide des Tresoriers, 2003, p.27(고용노동부(박지순 외, 2011), 154쪽에서 재인용)

31) GUY CAIRE., Les syndicats ouvriers, 1971, p.415(고용노동부(박지순 외, 2011), 155쪽에서 재인용)

32) 이하는 고용노동부(박지순 외, 2011), 160쪽 이하에서 요약 인용

33) C.G.T.-F.O., Le guide des Tresoriers, 2003, p.12(고용노동부(박지순 외, 2011), 158쪽에서 재인용)



- 감사위원은 노조가입자들의 조합비의 정확한 집행, 모든 재원에 대한 신뢰를 유지시키는 등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함

### 3) 특징

- 프랑스에서는 노동조합의 재정과 회계를 위한 특별한 국가법은 없으나 노동조합의 자치에 의해 노동조합 재정과 회계가 관리되고 있음
  - 특히 노동조합비 징수를 직접 노동조합이 행하고 있다는 점과 이를 통해 조합비 징수의 정확성과 연맹에서 단위노조에 이르는 분배가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음
  - 다만 프랑스에서는 재정국장과 감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실제 회계관리에 대한 매우 해박한 지식을 보유한 후보자를 찾고 있음
- 이밖에 프랑스에서는 조합원의 노동조합 회계에 대한 정보접근권 보장이나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행정관청에 연례보고의무를 지우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음
  - 다만 실제 운영에서는 조합원의 정보접근권 보장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고 있음
- 프랑스에서도 노동조합의 목적을 정치적 목적을 위한 활동은 허용하지 않고 일부 총연맹 규약에서도 임원으로 하여금 정당활동 위한 후보등록행위를 막고 있다고 알려짐<sup>34)</sup>

## 4. 독일

### 1) 규율 체계

- 독일에서도 노동조합의 재정이나 회계와 관련한 특별한 노동법적 규율이 존재하지 않고, 독일 노동조합 규약에서 자율적으로 민주적 조직구성과 운영의 원칙을 정하여 실현하고 있음
- 독일에서도 과거 노동단체의 권력에 대한 견제장치로서 노동조합법의 제정에 대한

34) 고용노동부(박지순 외, 2011), 191쪽

논의가 주목받은 적이 있음

## 2) 독일 노동조합 규약상 규율 내용<sup>35)</sup>

□ 독일 서비스산업노조(Vereinte Dienstleistungsgewerkschaft, Ver.di)는 회계감사위원회, 감독 및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

○ 회계감사는 노동조합의 전임활동가와 기관의 구성원은 될 수가 없고, 각 회계감사위원회는 자체 의장, 부의장, 서기를 선출하여 독자적으로 활동규칙을 정하여 해당 관할 노동조합 본부와 전문영역의 재정 및 회계를 감독하며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이사회와 총회에 제출함

○ 독일 연방차원의 중앙본부의 회계감사결과는 노동조합평의회에 제출하고 예산집행의 감사는 1년에 2회 시행

□ 독일 금속노조(IG Metall)도 감독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

○ 감독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감독위원회의 구성원은 금속노조에서 다른 권한이나 지위를 갖지 못함<sup>36)</sup>

○ 감독위원회는 정기 노동조합 총회에 활동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독일에서도 1970년대 중반에 노동단체의 권력에 대한 견제장치로서 노동단체권의 법적 규율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였고<sup>37)</sup> 이후 근래에도 대기업의 사실상 노동조합의 간부인 종업원평의회 간부가 연루된 부정부패사건이 발생하면서 미국법과 같은 노동조합 간부의 재산공개 등과 같은 규율 필요가 등장하기도 했음<sup>38)</sup>

○ 1976년 자유민주당이 발의한 노동단체법안에서는 노동단체의 내부조직은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법안 제5조), 이사회를 선출하여 결산보고의무를 부과하되 회계결산보고서는 특별히 임명된 감사에 의해 검토되도록 함(법안 제15조)

○ 또 노동단체에게 수입과 지출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회계장부는 5년간 보

35) 이하는 고용노동부(박지순 외, 2011), 136쪽 이하에서 요약 인용

36) 노동조합에 채용된 직원이나 노동조합의 집행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자는 회계감사가 될 수 없음을 예외없이 규정하고 있다고 함(하경효(2006), 앞의 글, 44~45쪽의 독일 통합서비스산업노조의 규약(<https://www.verdi.de/>)과 금속노조 규약(<https://www.igmetall.de/>)을 참조)

37) 이에 대해서는 Gerhardt, Das Koalitions-gesetz, 1977(고용노동부(박지순 외, 2011), 147쪽에서 재인용)

38) 이에 대하여는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2005, 13면(고용노동부(박지순 외, 2011), 147쪽에서 재인용)

관하여야 하는 등 회계장부작성의무를 부과하고(법안 제17조), 노동단체는 매년 연방 하원에 대해 노동단체의 활동과 설립 등에 관한 서면보고서를 제출하고, 금지활동을 수행했는지 노동단체의 활동으로 시민들의 권리침해가 발생한 경우 법적 자문과 실무 지원을 지원하도록 함(법안 제27조)

### 3) 특징

- 독일도 프랑스와 같이 노동조합의 운영은 물론 회계감시 등에 대해 노동조합의 자치적 규율에 맡기고 있고 좀처럼 법령을 통한 노동조합의 운영에 간섭을 하는 내용은 찾기 어려움
  - 나아가 회계감사의 자격에서 전문적인 능력을 요구한다는 규정 등은 발견되지 않음
  - 또 조합원의 노동조합 회계나 재정에 대한 정보접근권이나 행정관청에 노동조합 회계 관련 연례보고서 의무 규정도 존재하지 않음
- 독일에서는 법령은 아니지만 노동조합의 규약을 통해 노동조합의 회계업무 외에 노동조합에 대한 포괄적인 감사업무 규정을 두고 있는데<sup>39)</sup> 이는 다른 국가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관행임
- 독일에서도 노동조합의 힘과 권력이 과도한 시기이거나 노동조합 간부에 의한 재정 비리와 같은 부정부패가 목격되는 시기에서는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관련한 법적 규율 방안이 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5. 일본

### 1) 규율 체계

- 일본은 노동조합 조직도 기업별로 조직되고 규모도 크지 않고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에 관한 최소한의 규율만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39) 특히 독일에서는 대규모 노조나 전국단위 노조의 경우 1인의 회계감사는 사실상 감사의 실효성을 가질 수 없다고 보아 5천명 이상의 조합원을 가진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2인 이상의 복수의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고 함(하경효(2006), 앞의 글, 46쪽 주 36) 참조)

- 노동조합의 조합비 등과 같은 재정관련 법적 다툼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 해결되고 있음

## 2) 규율 내용<sup>40)</sup>

- 일본 노동조합의 재정은 조합비로 충당되며 조합비 징수는 주로 조합비공제조항 (check-off clause)에 의해 이루어짐

- 임시조합비의 경우 문제로 되는 것은 불법파업을 위한 투쟁자금의 징수가 문제되는데, 판례는 불법파업에 대한 참가의 강제나 이를 위한 비용각출도 위법행위에 대한 협력으로서 강제할 수 없지만 법률위반과의 관계성이 미약한 경우에는 임시조합비 징수에 대한 조합원의 협력의무를 긍정함<sup>41)</sup>
- 또 정치자금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정치적 활동이나 이를 위한 지출은 법적으로 허용되고, 안보투쟁 등과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개인의 정치적 자유 등과 관계가 극히 경미하므로 조합원의 협력의무를 긍정함.<sup>42)</sup> 다만 타 노동조합의 투쟁자금 지원도 조합원의 협력의무가 인정되나 특정 정당 후보 지지 등과 관련하여서는 조합원 개인의 정치적 자유와 충돌하는 것으로서 그 징수를 강제할 수 없다고 함<sup>43)</sup>

- 일본 노동조합법에서는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음

- 노동조합은 규약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서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 기부자의 성명 및 현재의 경리상황을 나타내는 회계보고를 적어도 매년 1회 조합원에게 공표해야 하고, 당해 회계보고의 정확성을 조합원에 의해 위촉된 직업적인 자격이 있는 회계감사인이 확인해주는 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노동조합법 제5조제2항)
- 이 경우 직업적 자격이 있는 회계감사인이란 법령에 의해 직업으로 회계감사를 할 자격이 있는 자를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공인회계사법의 해석상 공인회계사 및 감사법인과 신탁회사가 이에 해당함
  - 다만 사용자 및 그의 이익대표자는 지배개입의 우려가 있어서 조합회계의 공정을 기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려움

40) 이하는 고용노동부(박지순 외, 2011), 167쪽 이하에서 요약 인용

41) 國勞礦島地本号事件, 最三小判 1975.11.28., 民集 29卷 10号, 1968면(고용노동부(박지순 외, 2011), 179쪽에서 재인용)

42) 바로 위의 國勞礦島地本号事件

43) 바로 위의 國勞礦島地本号事件

- 노동조합의 전임자 및 조합 회계담당책임자 등 조합의 회계운영상 현저한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그가 직업적으로 자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급단체를 포함하여 자신이 소속하는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담당하기에는 공인회계사법상 그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어 적당치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일반조합원일 경우에는 무방하다고 해석됨<sup>44)</sup>
- 노조법은 노동조합 임원이 자신에게 편한 자를 자기 마음대로 위촉하지 못하도록 회계감사가 총회의 결의 등 일반조합원의 총의에 따라 선출되도록 규정함(노조법 제5조제2항제7호)

#### □ 일본 노동조합법에서는 노동조합의 기금 사용과 관련한 규정도 두고 있음

- 노동조합이 공제사업 기타 복리사업을 위하여 특별히 설치한 기금을 다른 목적을 위하여 유용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여 민주적 운영에 부합하도록 하고 있음<sup>45)</sup>
- 이 경우 다른 목적이란 조합원을 위한 복리 공제사업 이외의 것으로서 정치적 목적, 쟁의 목적, 문화적 목적 등을 포함하고 특히 타 노동조합의 파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그 파업기금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조합의 기금을 유용하는 것도 다른 목적에 해당함<sup>46)</sup>
- 노동조합의 총회 결의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로부터 기부를 노동조합의 일반경비로 사용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부정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회의 결의 여부와 무관하게 허용되지 않음

### 3) 특징

□ 일본 노동조합의 재정과 관련한 가장 큰 특징은 도무지 노동조합 재정비리에 관한 사건이 알려지지 않는다는 점임

□ 노동조합 재정이나 회계 관련 규정도 그렇게 많은 내용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고려하는 필요 최소한의 규정만을 담고 있음

- 다만 회계감사원은 조합원에 의해 위촉된 직업적 자격이 있는 회계감사원이라는 규정이 있고 회계감사원에는 노조전임자나 노조회계담당책임자는 제외되며 조합원의 총회 결의를 통해 위촉되어 노조임원의 자의에 의한 위촉 우려는 최소화 됨

44) 1950.3.13. 勞收第516号(고용노동부(박지순 외, 2011), 181쪽에서 재인용)

45) 吾妻光俊, 註釋勞働組合法, 靑林書院, 1959, 254면(고용노동부(박지순 외, 2011), 182쪽에서 재인용)

46) 東京大學勞働法研究會, 註釋勞働組合法 上卷 89 II4, 599면(고용노동부(박지순 외, 2011), 182쪽에서 재인용)



## IV. 결론: 정책 제언

### 1. 우리나라에서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논의 필요성

- 우리나라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논의와 구체적 실현 방안 등은 논의의 축적도 있고 실현 경험도 풍부한 것에 비해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관련 논의와 실현 경험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거나 지속성도 떨어지는 것이 사실임
  - 국내에서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관련 논의는 국내 노동조합의 조직력 등이 낮은 수준으로서 실제 사회적 책임을 거론할 정도로 사회적으로 노동조합의 부정적인 영향은 적을 수 있음
  - 그러나 국내 노동조합 조직률은 낮지만 대기업과 공공부문 노동조합 조직률은 적은 편이 아니므로, 특히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논의는 이들 노동조합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음
-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이 ISO 26000으로 제정되어 모든 단체에게 적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사회적 책임을 거론하려면 해당 노동조합 조직이 사회적 책임에 걸맞는 사정이나 실태가 존재해야 하는 것은 틀림이 없음
  - 이 때문에 국내에서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관련 논의에서도 단체의 사회적 책임은 해당 단체의 사회적 영향력, 단체의 사업규모, 영리적 성격이 강하거나 클수록 그 단체의 사회적 책임은 비례하여 커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에서도 해당 조직이 사회적 영향력이 클수록(공무원 노조), 규모가 클수록(대기업 노조), 단체가 감당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은 커질 수밖에 없다<sup>47)</sup>는 지적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음
  - 적어도 국내 노동조합도 규모가 적지만 대기업과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경우 국내 노동시장 양극화 고착의 한 축을 이루고 있고, 또 전국단위 노동조합의 경우 주요 노동 관련 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국내 노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책임 논의의 의미도 충분히 있다고 보임

47) 손영우, 노동조합에게도 사회적 책임이 있는가?(사회적 책임의 대상 확대와 노조 적용에 관한 연구), 기억과 전망 겨울호 통권 27호, 2012.12, 243쪽

□ 따라서 국내 노동조합이 차지하는 지위나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면 국내 노동조합도 사회적 책임 논의는 필요하고, 특히 대규모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서 사회적 책임 논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구체적으로 대기업 내지 대규모 노동조합들에 의해 종종 발생하는 노조 재정이나 회계 비리 등에 대해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 유도 강화를 위해 규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핀셋 방식의 재정 회계 투명성 제고 책임 강화가 필요할 수 있음

## 2. 우리나라에서 노동조합의 재정(회계) 투명성 제고 필요성

□ 국내 노동조합의 규모나 조합비 징수 축적 관행을 고려하면 국내 노동조합에 대해 현행보다 강화된 재정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될 수 있음

○그러나 주요국의 사례에서 발견되는 보편적 규율 방식이나 국내 노동조합 중 영향력 있는 실체를 고려하면 노조 재정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은 필요한 것으로 진단됨

□ 주요국의 노조 재정 회계 투명성 제도는 규율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치밀한 노조 재정 회계 감사가 필요하다는 보편적 규율 내용이 확인됨

○노동조합의 재정 회계 투명성 관련 해외사례에서 영미국가와 유럽국가 간 대조적인 방식을 보여주고 있고 영국과 미국 간에도 재정 회계 투명성 제고 내용이 다름을 볼 수 있음

○영미국가는 법령을 통해 직접 노동조합의 재정 회계 운영이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규율하는 방식이고, 독일 프랑스는 전적으로 노동조합의 자치에 맡겨두고 있음. 일본은 영미국가와 유럽의 중간 방식으로 볼 수 있음

○또 영국은 노동조합의 재정 회계 감시 기능에 상당한 규율을 하는 내용이지만 미국의 경우 노조 재산을 다루는 조합간부의 보고의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합간부 개인의 비리 예방 기능에 상당한 규율을 하는 내용으로 대조됨

□ 국내 노동조합은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중 규율 방식은 영미 방식에 가까운 방식으로 볼 수 있으나 규율 내용은 주요국에 비해 적은 편에 속하므로 제도 개선 모색이 필요함

- 국내 노동조합의 재정 회계 관련 비리나 관리 기능을 보면 영국 미국과 같은 거대 노동조합 재정 규모와도 다르고 독일 프랑스와 같이 오랜 전통으로 규약의 자치 기능이 잘 구축되어 있는 것도 아님
- 결국 국내 노동조합의 조직 규모나 국내 노조의 재정 회계 비리 실태를 고려하는 규율 방안으로 모색될 수밖에 없음

### 3.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재정(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

#### 1) 규율 내용

- 국내 노동조합 중 대기업과 일정규모 이상의 공기업 노동조합의 경우 내부 또는 외부 회계감사를 전문적 독립적 기능을 할 수 있는 회계사 자격증 있는 감사 체계로 의무화 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 필요
  - 회계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방안으로서 앞서 본 대부분의 주요국의 노조 재정 회계 투명성 규율 내용에는 보편적으로 존재했고, 국내에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sup>48)</sup>
  - 다만 소규모 노조의 경우 외부 회계감사 체계 의무화 실현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외부회계감사 의무화는 일정규모 이상의 노동조합에 대해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임<sup>49)</sup>
- 현행제도에 없는 노동조합 재정 회계 관련 보고서나 자료 등에 대해 일반조합원들의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 필요
  - 현행법은 회계감사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고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6조)
  - 열람의 범위 내지 열람권의 내용이 문제로 되는데, 앞서 본 최근 대법원 판례는 감사 결과 외에도 재정과 운영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필요한 열람권을 인정하는 전향적인 해석<sup>50)</sup>을 보여 주고 있으나 열람청구 가능 내용을 법령으로 명확히 열거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8) 하경효(2006), 앞의 글, 44쪽.; 김정환(2005), 31쪽

49) 김정환(2005), 31쪽도 1,000인 이상에 대해 회계감사에 대한 외부공증제도 도입을 제기하고 있음

50) 앞서 본 대법원 2017.2.15. 선고 2016다264037(심리불속행기각) 판결(원심 서울고등법원 2016.10.14. 선고 2015나2054842 판결)



- 국내 노동조합 중 대기업과 일정규모 이상의 공기업 노동조합의 경우 회계감사 이외에 업무감사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하지는 않는지 검토 필요
  - 노동조합의 업무감사 의무화 여부는 국내 노동조합의 실태에 비추어 필요한지 여부가 논란으로 될 수 있으나 종전부터 문제 제기는 이루어져 왔음<sup>51)</sup>
  - 확실히 대규모 노동조합의 경우 회계 투명성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업무 투명성 제고 필요도 높을 것으로 추단되므로 노동조합의 업무감사 의무화 여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 규율 방식

-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제고 규율 내용을 법령에 반영하여 직접적으로 실현하는 방식과 조합규약 기재사항에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게 하여 간접적으로 실현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방식이든 간접적으로 규율하는 방식이든 모두 법령 개선이 필요한 것이기는 하나, 직접적 규율 방식은 노동조합의 운영에 국가법이 너무 직접적으로 개입한다는 비판도 제기될 가능성이 있음
  - 간접적으로 규율하는 방식은 현행법상 노동조합 규약 기재 사항에서 필요한 회계감사와 운영 관련 내용(노조법 제11조 중 회계감사와 운영 관련 내용)에 외부회계감사 내지 열람관련 권한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노동조합 스스로 규약을 통한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식임
  
- 노동조합의 자치적 규범을 통한 투명성을 제고하는 간접적 규율 방식이 노조의 민주적 운영 제고에 친한 방안으로 판단됨

51) 하경효(2006), 앞의 글, 47쪽.; 김정한(2005), 31~32쪽. 김정한은 업무감사 등과 같은 포괄적 업무감사를 감찰기구로 표현하고 있음

## 참 고 문 헌

### [국내문헌]

---

- 고용노동부(박지순 외), 노동조합 재정투명성 확보방안, 2011
- 김정환, 노동조합 재정비리의 원인과 향후 과제, 월간노동리뷰 2005.6. 한국노동연구원
- 이장원, 노조의 사회적책임(SR) 확산 방안, 한국노동연구원, 2010
- 장근호,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특징과 과제, BOK경제연구, 2018.11.
- 정승국 강충호 한동균, 노조의 사회적 책임(USR) 논의의 현황 및 발전전망, 2010, 한국노동연구원
- 정경호,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노동연구 26호, 2013.10,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259
- 이장원, 노조의 사회적책임(SR) 확산 방안,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심포지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Beyond (SR)), 발표자료.
- 권순원, 변화하는 기업경영과 USR: USR의 이론과 효과, 2010년 하계 노동경제학회 발표자료 등을 참고
- 손영우, 노동조합에게도 사회적 책임이 있는가?(사회적 책임의 대상 확대와 노조 적용에 관한 연구), 기억과 전망 겨울호 통권 27호, 2012.12.
- 하경효,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재정운영의 투명성, 산업관계연구 제16권2호,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06.12

### [해외문헌]

---

東京大學勞働法研究會, 註釋勞働組合法 上卷, 1985

**keri**  
한국경제연구원  
www.keri.org

(073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 TOWER 46층  
전화 : (대표)3771-0001 팩스 : 785-0270



값 5,000원